

정 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서기 1954년	1월	27일	제	정
서기 1954년	6월	30일	일	부개
서기 1954년	8월	3일		정
서기 1957년	1월	27일		"
서기 1959년	3월	19일		"
서기 1962년	4월	10일		"
서기 1964년	1월	29일		"
서기 1964년	6월	15일		"
서기 1968년	2월	21일		"
서기 1969년	1월	24일		"
서기 1971년	5월	10일		"
서기 1972년	9월	19일		"
서기 1973년	2월	13일		"
서기 1974년	3월	20일		"
서기 1975년	2월	13일		"
서기 1976년	6월	4일		"
서기 1976년	12월	30일		"
서기 1980년	12월	10일		"
서기 1981년	8월	20일		"
서기 1982년	2월	27일		"
서기 1984년	1월	30일		"
서기 1986년	8월	2일		"
서기 1986년	11월	26일		"
서기 1987년	2월	20일		"
서기 1988년	2월	27일		"
서기 1990년	2월	15일		"
서기 1991년	2월	20일		"
서기 1993년	2월	16일		"
서기 1993년	6월	10일		"
서기 1994년	3월	5일		"
서기 1995년	4월	6일		"
서기 1996년	11월	14일		"
서기 1997년	3월	10일		"
서기 1998년	4월	1일		"
서기 1999년	3월	12일		"
서기 2007년	4월	20일		"
서기 2011년	7월	1일		"
서기 2013년	4월	17일		"
서기 2020년	4월	29일		"
서기 2021년	5월	10일		"
서기 2026년	4월	8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칭한다)에 관한 국책수행에 협력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총 역량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을 행하고 정부의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 칭한다.
본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제3조(통할구역) 본 협회의 통할구역은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제4조(소재 및 연락소 설치)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청 소재지 및 경기도 일원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건의 헌책 및 협력
2. 협회사업에 관한 지도조사 및 연구
3. 운임운송 기타 회원의 사업에 관한 통할
4.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구입 및 공동시설
5. 회원의 공제
6.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용자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지도에 관한 사항
8. 종사원의 취업관리
9. 종사원 연수기관의 설립운영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이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상황의 검사)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회원의 사업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징수) 본 협회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 제8조(회원의 자격) ①경기도 관내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필한 자와 영업소 및 지점을 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다만, 회원의 의결권 정수는 허가 등록대수 20대 이상 업체를 1사1표로 하며, 20대 미만업체는 20대 미만인 다른업체와 연대하여 20대 이상으로 하고, 그 중 대표자 1명을 대의원으로 정한 경우와, 회비 불입 차량대수가 150대 이상인 영업소장 및 지점장은 총회에서 1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4·29>
- ②법인인 회원은 그 대표자를 정하여 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동일인이 2개 업체 이상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업체 수대로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본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
2. 총회 소집
3. 이 협회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4. 이 협회서류 열람
5. 이 협회의 공동시설 이용

제10조(회비 부과) ①본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부과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 부과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은 매월 부과되는 회비를 당해 월의 20일까지 납부한다.
- ②회비는 회원의 보유대수 비례로 이를 부과한다.
- ③가입비는 회원의 신규면허대수 비례로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이를 부과한다.
- ④특별회비는 본 협회의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⑤협회운영상 부득이 제기금을 각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이를 부과한다.

제11조(회원의 제재) ①본 협회는 회원이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4·29>

- ② 협회비를 1년분 이상 장기 체납하거나 소송등으로 협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3·4·17>
- ③ 전항에 의한 구체적인 제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신설 13·4·17>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및 선출방법) ①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전무이사 1명
4. 이 사 32명 이내
5. 감 사 2명

②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중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부이사장 및 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형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07·4·20>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등으로 집합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현장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서면투표 또는 일정장소에서 워킹스루 방법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5·10>

④이사장 당선은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이사장 선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본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신설 07·4·20>

⑤전무이사는 회원 이외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개정 11·7·1>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방법) ①본 협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1·7·1, 20·4·29, 26·4·8>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는 다음에 의하여 보선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 감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보선한다.

제14조(회원의 대표권) ①이사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통리하고 각 회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이를 대리한다.

③이사장, 부이사장이 모두 유고로 궐위시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07·4·20>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

제16조(임원의 처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제17조(고문) ①이 협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회의 의결로서 이를 추대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회의 종류와 소집방법) ①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서면총회를 할 수 있다.

단, 서면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②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결 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개최한다.<개정 07·4·20>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성원과 의결) ①회의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서 채택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은 출석인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4·29>

②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대의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된 자에 한하여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표결권) ①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감사 및 전무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긴급사항 조치) ①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급하여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총회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
2. 수지예산과 회비 기타부과금 및 징수방법
3. 회원의 사업통할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기채 및 그 상황
5. 기타 중요 사항

②전항 제1호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대리권) 총회에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공부상의 임원이거나 또는 의결권 있는 회원에게 위임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선출에 따른 선거권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공부상의 임원 이외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07·4·20>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요한다.

1. 제6조의 검사
2. 제10조의 경비 부과 방법
3. 제11조의 사업에 대한 제한
4. 제13조의 4항의 이사 보선
5.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회의록의 작성) ①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회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개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총수 및 출석 인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사의 요령
5. 결의사항 및 찬부의 수효
6. 기타 참고사항

②이사회 의사록은 전항에 준하여 작성하되 의장 및 출석 이사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자산) 이 협회의 자산은 다음 사항으로서 이를 조성한다.

1. 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설비 및 기타 물건
2. 부과금 및 회비
3.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
4. 이 협회사업 및 재산에서 생한 수익
5. 사용료 및 수수료
6. 기타 수입

제27조(회계년도) 이 사업 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8조(협회 자산의 열람)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일 1주일 전에 협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수지예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 협회에 비치하여 회원의 열람에 공한다.

제29조(결산승인) 이사장은 전조의 감사가 감사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0조(규정 제정) 이 정관 외 선거관리규정등 제반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제정한다.<개정 07·4·20>

제6장 해 산

제31조(해산과 청산) 본 협회는 총회에서 해산결의가 있을 때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장이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 195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창립비) 본 조합의 창립비는 300원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분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4·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4·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4·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5·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6·4·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으로 변경된 임원의 임기는 개정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